

생활 속 법률이야기

영업 준비를 위한 차용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영업 준비를 위한 차용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요?

피고 A씨는 학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B씨로부터 영업준비자금을 위해 돈을 차용했습니다.

B씨는 돈을 차용해 줄 때, 돈을 차용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차용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씨는 변제기일이 10년 지난 후에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동일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상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주장하고, B씨는 민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과연 몇 년인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학원업을 운영해서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A씨의 차용행위는 학업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B씨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차용행위를 한 때 A씨는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에서 옳습니다.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여금])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제47조(보조적 상행위)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영업준비를 위한 차용행위는 행위자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좇관적 의사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준비를 위한 차용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시효와 달리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